

기입 예

令和 5年 4月 1日

2023년 '4월 1일'로 기입해 주십시오.

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受給資格認定申請書 (初回時)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以下「就学支援金」といいます。)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첫 회째)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하 「취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收入 状況 届出書 (2回目以降)

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届け出ます。

수입 상황 신고서 (2회째 이후)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취학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겠습니다.

(上の2つの□のうち、いずれかの□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次の事項を必ず確認の上、両方の□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다음 2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기입.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

(以下の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記入に当たっては、別紙の「記入上の注意」及び「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

학생의 성명과 '후리가나'를 기입하십시오.

ふりがな	ばんごう	こたろう
生徒の氏名	番号	小太郎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生徒の生年月日	平成19 年 8 月 15 日
---------	-----------------

학생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生徒の住所	〒231-0021 神奈川県 横浜 中区日本大通1000
-------	------------------------------

주간에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하십시오. 보호자 전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保護者等の電話番号	父090-0000-0000 母080-0000-0000
-----------	-------------------------------

保護者等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	XXXXXXXXXXXX@XXXXX.XX.XX
----------------	--------------------------

生徒が在学する学校の名称	神奈川県立〇〇学校
--------------	-----------

【1. 高等学校等の 재학기간에 대하여】 (수입상황신고서의 경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등(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정시제・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 (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에 입학(전입학)한 날짜 등을

①現在通っている高等学校等の在学期間	神奈川県立〇〇学校	年月日 ~ (うち支給停止期間等)	①高等学校(全日制)
--------------------	-----------	-------------------	------------

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하십시오.

②過去に別の高等学校等に在学していた期間		年月日 ~ (うち支給停止期間等)	
----------------------	--	-------------------	--

[2.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개인번호카드의 사본,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주민표기재사향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①~⑦ 중에서 하나의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1) 다음의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① **친권자(부모) 2명분**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양친)이 2명 존재하는 경우

② **친권자 1명분**
 (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에 ㄴ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임시 친권을 가진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경우에는 ⑤~⑦ 중 하나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 친권자 1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1명의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③ **미성년 후견인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단,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합니다.)

④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다)(양친 등) 2명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 성인이 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

⑤ **주된 생계유지자 1명분 (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에 ㄴ표를 하십시오.)**

아 주된 생계유지자 한 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이
 ·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⑥ **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2) 다음 이유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⑦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①~⑦ 중에서 하나의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⑦에 ㄴ표를 하신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 1~6월인 경우는 그 전년의 1월 1일 현재)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아래 □에 ㄴ표를 하십시오.)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たろう 番号 太郎 生年月日 1975 年 6 月 6 日 <input type="checkbox"/> 생활부조를 받고 있다.	生徒との続柄 父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はなこ 番号 花子 生年月日 1977 年 3 月 31 日 <input type="checkbox"/> 생활부조를 받고 있다.	生徒との続柄 母
---	--------------------	--	--------------------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는 분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생활부조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ㄴ표를 하십시오.

상기 보호자 등의 2022년 1월 1일 시점과 2023년 1월 1일 시점의 시구정촌까지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2022년 1월 1일 시점 神奈川県 横浜市 <input type="checkbox"/>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	2022년 1월 1일 시점 神奈川県 横浜市 <input type="checkbox"/>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
2023년 1월 1일 시점 神奈川県 横浜市 <input type="checkbox"/>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	2023년 1월 1일 시점 神奈川県 横浜市 <input type="checkbox"/>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시는 분의 2022년 1월 1일 시점과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입하십시오.

※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개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의 과세소득액(과세표준액)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의 변경, 이혼·사별,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ㄴ표를 하십시오.

[3. 확인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설치자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